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8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 제 1 행 정 부

## 판 결

| | |
|---|---|
| 사 건 | 2016구합843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의료법인 A |
| 피 고 | [redacted]시장 |
| 변 론 종 결 | 2017. 3. 21. |
| 판 결 선 고 | 2017. 4. 4. |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2015. 4. 14.자 재산세 등 부과처분과 같은 목록 기재 2016. 11. 11.자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8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redacted]시 B 외 9필지를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C병원 건물과 기숙사 등(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에 대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년 지방세 서면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C병원이 2010. 9. 11.부터 계속 휴업 중임을 확인하고, 2015. 4.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면제되었던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5. 4. 14.자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3. 7. 이를 기각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1.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6년 재산세 등의 체납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체납재산세 등과 이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6. 11. 11.자 처분'이라고 하고, 위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 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2016. 11. 11.경 이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6년 재산세 등의 납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8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서 이 사건 2016. 11. 11.자 처분 중 각 가산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각 가산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기본법 제59조, 제60조에 규정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가산금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적자 누적 등을 이유로 새로운 병원의 개설을 준비하면서 진료업무만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을 뿐 진료기록과 예방접종기록의 사본 발급 등 의료기관으로서의 일부 기능은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의료기기 및 관련시설도 휴업 전의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가 병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은 의료업을 영위하기 위한 병원과 부속시설 및 그 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수익사업 등 병원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제공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재산세 등은 경감 또는 면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위와 같이 진료업무를 중단하게 된 경위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현재 의료업의 수행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과 지방세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8

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각 처분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은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경감 또는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의료업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밖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갑 제3,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년 약 3억 6,000만 원, 2010년 약 11억 5,0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2010. 9. 11.부터 휴업을 하게 된 사실, 휴업 중에도 진료기록과 예방접종기록의 사본 발급 업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8

는 계속 수행한 사실, 건물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가 병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0. 9. 11.부터 휴업을 계속 하다 2016. 8. 19. 자진폐업한 후 주식회사 [redacted]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현재 아파트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점, ② 휴업기간 중 원고로부터 주차장관리업무를 위탁받은 D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차고지와 렌트카 업체의 차고지 등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수행한 진료기록과 예방접종기록의 사본 발급 업무는 의료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폐업의 경우에도 행하여야 하는 업무인 점, ④ 의료법인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 재산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병원을 휴업, 폐업 또는 이전하여 현실적으로 의료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감면혜택을 받기 어려운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보유는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 현실적으로 의료업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세 등의 경감 또는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금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8

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효두

판사 박종환

판사 박주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8

(별지1)

# 재산세등부과처분

1. 2015. 4. 14.자 재산세등부과처분

가.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 외 9건(면적 13,031.8㎡) 토지에 대한 재산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1) 2011년분 재산세(토지) 52,442,080원, 지방교육세 7,829,900원

(2) 2012년분 재산세(토지) 58,112,310원, 지방교육세 8,682,510원

(3) 2013년분 재산세(토지) 62,438,710원, 지방교육세 9,333,360원

(4) 2014년분 재산세(토지) 64,953,000원, 지방교육세 9,711,710원

나.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1) 2011년분 재산세(건축물) 9,507,730원, 지역자원시설세 5,789,670원, 지방교육세 1,218,940원

(2) 2012년분 재산세(건축물) 10,146,150원, 지역자원시설세 6,183,500원, 지방교육세 1,300,790원

(3) 2013년분 재산세(건축물) 9,938,020원, 지방교육세 1,274,110원

(4) 2014년분 재산세(건축물) 9,906,290원, 지방교육세 1,270,040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8

다.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1) 2011년분 재산세(건축물) 10,610원, 지방교육세 1,360원

(2) 2012년분 재산세(건축물) 9,040원, 지방교육세 1,150원

(3) 2013년분 재산세(건축물) 6,870원, 지방교육세 880원

(4) 2014년분 재산세(건축물) 5,300원, 지방교육세 680원

라.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 주택에 대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1) 2011년분 재산세(주택) 8,986,420원, 지역자원시설세 6,800원, 지방교육세 1,298,650원

(2) 2012년분 재산세(주택) 9,831,680원, 지역자원시설세 5,470원, 지방교육세 1,423,870원

(3) 2013년분 재산세(주택) 10,523,240원, 지역자원시설세 4,090원, 지방교육세 1,526,330원

(4) 2014년분 재산세(주택) 11,026,480원, 지방교육세 1,600,880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8

2. 2016. 11. 11.자 재산세등부과처분

가.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 외 13건(면적 13,177.4㎡) 토지에 대한 재산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1) 2016년분 재산세(토지) 70,622,400원 및 (중)가산금 2,966,130원

(2) 2016년분 지방교육세 10,417,280원 및 (중)가산금 437,510원

나.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1) 2016년분 재산세(건축물) 9,464,580원 및 (중)가산금 624,640원

(2) 2016년분 지역자원시설세 5,762,620원 및 (중)가산금 380,320원

(3) 2016년분 지방교육세 1,213,410원 및 (중)가산금 80,080원

다.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1) 2016년분 재산세(건축물) 5,890원 및 (중)가산금 170원

(2) 2016년분 지방교육세 750원 및 (중)가산금 20원

라. [redacted]도 [redacted]시 [redacted] 주택에 대한 재산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1) 2016년 1기분 재산세(주택) 6,242,250원 및 (중)가산금 411,960원

(2) 2016년 1기분 지방교육세 908,440원 및 (중)가산금 59,950원

(3) 2016년 2기분 재산세(주택) 6,242,250원 및 (중)가산금 262,160원

(4) 2016년 2기분 지방교육세 908,440원 및 (중)가산금 38,150원.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8

(별지2)

##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 경감[특별시 ·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1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를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특별시 ·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2-18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 3. 14. 대통령령 제25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끝.